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항만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「항만공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854호, 2026. 7. 7. 공포, 2027. 1. 8. 시행)됨에 따라, 운반·적치·하역장비 임대업, 물류정보처리업, 항만하역사업 등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한편, 부산항북항 마리나조성 사업과 「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 등 항만재개발과 확장 등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 신설(안 제4조제2항)

- 「항만공사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의 외국 항만의 건설·관리·운영 및 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·운영 사업을 삭제하고, 「항만공사법」(법률 제21854호, 2026. 7. 7. 공포, 2027. 1. 8. 시행) 제8조제1항 제3호의2의 위임사항인 물류서비스업의 범위 규정

-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액 물류장비임대업 중 운반·적치·하역

장비 임대업, 항만 하역작업 효율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물류정보 처리업, 항만운영의 공백 방지를 위해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하역사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

나.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규정 정비(안 제13조제1항)

- 현행법은 사용료 등 징수 대상을 기존 시설*로만 규정하고 있어, 항만의 확장·재개발, 친환경·스마트화 등으로 새롭게 조성된 항만시설의 사용료·임대료 징수 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,

* (사용료)선박료, 화물료, 여객터미널 이용료, 전용 사용료 등, (임대료)부두시설, 하역 장비, 창고시설, 컨테이너조작장, 항만배후단지, 항만시설 외의 토지·건물 등

- 향후 항만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해 적법하고 신속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

다. 인용 조문 정정(안 제2조제1항 별표)

- 「항만공사법 시행령」 〈별표〉 “공사의 관할 구역”의 인용 조문이 「항만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제3조제1항으로 정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법 제8조제1항제7호**”를 “**법 제8조제1항제3호의2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물류장비임대업(운반·적치·하역장비 임대업에 한정한다.)
2. 물류정보처리업
3. 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사업에 한정한다.)

제13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“**항만시설**”을 “**그 밖의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**”로 한다.

바. 그 밖의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외의 토지·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항만공사법 시행령 [별표] <신설 2017. 6. 20.>

공사의 관할 구역(제2조제1항 관련)

구분	관할 구역
1. 부산항만공사	「항만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부산항의 항만구역
2. 인천항만공사	「항만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인천항의 항만구역
3. 울산항만공사	「항만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울산항의 항만구역
4. 여수광양항만공사	「항만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여수항 및 광양항의 항만구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업) ① (생략)	제4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</u>	② <u>법 제8조제1항제3호의2</u> ----- ----- -----.
1. <u>외국 항만의 건설</u>	1. <u>물류장비임대업(운반·적치·하역장비 임대업에 한정한다.)</u>
2. <u>외국 항만의 관리 및 운영</u>	2. <u>물류정보처리업</u>
3. <u>항만물류정보와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</u>	3. <u>항만운송사업(항만하역사업에 한정한다.)</u>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) ① <u>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사(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)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제13조(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사용료	1. -----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삭제	
<u><신설></u>	<u>바. 그 밖의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외의 토지·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</u>

2. 임대료 가. ~ 마. (생 략) 바. <u>항만시설</u> 외의 토지·건 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·③ (생 략)	2. 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<u>그 밖의 항만시설 및 항만 시설</u>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	
연 락 처	(051) 773 - 5751